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·기술개발을 추가함(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